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99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 박은정 · 김재원 · 복기왕

이해민 · 황운하 · 임미애

백승아 • 진선미 • 이기헌

김준형 · 서왕진 · 정춘생

신장식 · 위성락 · 김선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은 전직대통령의 연금, 기념사업, 경호 등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. 제7조에서는 그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 헌법 제84조는 재임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,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함을 적시하고 있음.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「형법」상 내란의 죄(「형법」 제87조부터

제90조) 및 「형법」상 외환의 죄(「형법」 제92조부터 제101조)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직대통령이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또는 「형법」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에 이르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 ①	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 ①
·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직대
	통령이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
	90조까지 또는 「형법」 제92조
	부터 제101조까지에 이르는 죄
	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
	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
	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
	하지 아니한다.